법조문과 법해석의 객관성

구 연 창
<법대교수·민법>

法이란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하거나 형성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효력을 가지는 規範을 말한다. 法規範은 인간의 사회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実生活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법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社会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실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法의 적용이란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판단하는 것이다.

즉, 추상적인 법규범을 大前提로하고,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3단논법에 의한 推論으로서 법적 가치판단을내리는 것이 법의 적용인것이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行政機関에 의해서도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도 행하여진다. 그러나 법적용의 전형적인 모습은 法院의 재판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법의 적용에 있어 소전제인 사실의 인정이 중요함은 물론이나, 대전제인 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른바 법의해석이다. 법의 해석이란 추상적·일반적인 法規範이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法解釈의 대상은 成文法에국한되지 아니하고 慣習法, 判例法, 條理등 不文法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存否 및 内容을 확정하여야 하며, 비록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대개 추상적·일반적인 文言으로 되어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법의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일찌기 독일법학의 거성인사비니(Savigny)가 법의 해석이란 추상적인 법규가 표현하는 사상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포착하는 것이며, 법해석의 임무는 「法에内在하는 사상의 再構成」이라고 한 말에서도 법해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법규범의 거의 대부분이 成文法의 형식으로 존재하므로 성문법규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해석에 있어 중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대상인 법규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첫째, 법규의 抽象性이다. 실제로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이유에서 법규는 퍽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때로는 법규가 「社会常規」, 「正当하다고 인정될 때」 등과 같은 거의 白紙的 규정을 두고 그 구체적 내용은 해석을 통하여 결정케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먼저 추상적·일반적인 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둘째의 어려움은 법제정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정치적 영향이 작용하기때문에 법조문의 문자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법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데에 있다. 법제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지배층의 의욕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 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법규의 문자배후에 어떠한정치적 고려와 타산이 숨어있는가도아울러 참작해야하기 때문이다.

법의 해석방법 내지 기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법규의 문장·용어를 기초로하여 그문자가 가지는 보통의 의미에 따라서 하는「文理解釈」, 어떤입법전체를 하나의 論理的 體系로 구성하여 각 조문을 전체계와 조화하는 내용을 부여하려는 「論理解釈」이 대표적이나, 그 외에도 類推解釈, 反対解釈, 拡張解釈, 縮小解釈, 變更解釈등이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을 제멋대로 사용해서 해석한다면 그해석은 恣意的인 것이되어버리고해석의 객관성을잃게된다.

흔히들 법을 가리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흑평을 가하는 것은 같은 법규를 사람에 따라 또는 때나 장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법의 해석이 객관성을 잃고 자의적으로 될 경우를 비양대는 말이다. 법해석에 있어 客観性을 보증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정부는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종래의 미비했던 公害防止法을 전면적으로 폐지·개편하고서 1977년말 환경보전법을제정했었다.

1978년 7월1일부터 이법이시행되자 주로 재정적인 이유로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꺼리는 기업들이 이법의 시행에대해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모처럼제정한 이법의시행에 차질을가져올 우려마저 있었던적이 있다. 그때 검찰당국은 환경보존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강력한단속을 펌으로써환경보전의 일익을 담당하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환경보전법 제66조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관계담당검사가 필자를 찾아와 자문을 구하면서, 동법 제14조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배출시설의 비정상가동으로 해석·적용하면 법의 실효성을 살리고 우리 나라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환경보전법의 실효성제고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케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公共福利 増進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해석태도는 족히 칭찬할만한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같은 해석·적용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우선 배출허용기준 위반의 경우에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법상의 규제는 ①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②주어진 개선기간내에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조업정지·제한을 명하고, ③만약 이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그 기본구조로 되어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에서 시도하려는 법의 해석태도는 동법상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이의적인 것이되어 부당하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결국 검찰은 그와 같은 해석의 시도를 포기했었던 것이다.

법의 해석이 자의적인 것이되지 않도록 그 객관성을 보증하는 것은 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목적이나 정신을 이해하고, 그 목적이나 정신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의 객관성을 잃었을 경우 법적 구제방법은 행정심판및 소의 제기 그리고 상소가 있을 따름이다.

법의 해석은 그 목적·정신에 따라 행하여짐으로써 客観性을 가질 수 있게 되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사람에 따라 법의 해석을 달리하는 수가 많음은 부정할 수 없다.

법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이해관계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公正하게해석하려고해도 해석의 主観性을 피할수 없어 해석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이상내지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것이다. 또한 법은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나 이상의 공약수로서 妥協的산물이며, 이념으로서는 正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상과 거리를 가지는 수가 있다. 이러한 법에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자기 이상에 접근시켜서 해석하게된다.

그러나 해석은 法文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그 法文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경우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내에서 갈라지는 해석 가운데서 法院이 채용하여 判決로서 선고된 것이 事実上의 拘束力을 가지게된다. 따라서 해석이 갈라지더라도 判決에서 공권적으로 확정됨으로써 法的安定性은 유지된다.

더구나 영미법계에서와 같이 선결예구속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法院의 判決에서 내린 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의 해석은 또한 그 본질적 성격이 입법작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 내지 객관성 보증의 기준이 있게 된다. 입법부의 입법작용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 (엄격하게는 法源)을 창조하는 것이므로 입법자의 가치판단이 여기에 가해져, 입법창조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의 権限을 행사하는 것이 되며, 3権分立의 원칙상 법해석자에게는 法創造禁止의 義務가 필연적으로 지워진다. 여기에 법해석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른한편 법해석자, 특히 법관은 그에게 제기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지워져있다. 즉, 법규가 없다든가 법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든가 하는이유로 그 문제의 해결을 거부할 권리는 법관에게 없다. 이를 보통 法拒絶禁止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4.19직후 3.15부정선거등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자유당정부의 이른바 반민주적행위자들을 구속·처벌하게 되었을 때, 한 법관이 적용할 법의 부재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한 사실이 온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면서 적잖은 물의를 일으켰었다.

당시 법과대학 3학년이었던 필자를 포함한 몇몇 법학초년

따라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입법 내용은 물론 입법 절차나 과정에서부터 재고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매년 5월 1일이 되면 법의 날 행사를 가지고, 법의 생활화 운동을 펼 것을 외치곤 한다. 지금까지 국민의 준법정신이 낮다고 자탄하곤 해왔다. 이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 볼 때인 것 같다

자의적 해석은 법의 근본 목적 파괴

법 제정시 이해 관계 있는 개인·단체 참여의 폭 넓혀야

학의 근본문제를 다루었다는 생각이든다.

그 재판거부사건 때문에 결국 우리 나라 역사상 또 한번의 遡及特別立法에 의한 권리·재산의 박탈·제한의 소용돌이가 밀어닥쳤었다.

정부가 기존법의 해석을 넓게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낌에도 법해석의 한계에 부딪쳐제한을 받게되면 새로운 입법 또는 법개정을 시도하게 마련이다. 앞에서 법해석과 비교할 때, 입법은 입법자의 가치판단이 원칙으로 자유로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해석의 제한성에 비교했을 때 강조될 수 있을 따름이다.

입법역시 절차상·내용상 많은 制約이 따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법해석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입법의 내용에 의하여 그것을 한갖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다시말해서 좋은 法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었을 때 법해석의 의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입법과정이 대개 졸속적이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立法이 공포·시행되게 될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발이 크게 되고, 법의 실효성은 낮으며, 법에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하여 선진제국에서는 이해관계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또한 立法府内에 있어서도 입법은 妥協的 산물로서의 성격이 지극히 강하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이 높고, 반발이 적은 편이며,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立法내용은 물론 立法절차나 과정에서부터 재고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이 되면 法의날 행사를 가지고 법의 생활화운동을 펼 것을 외치곤한다. 지금까지 국민의 준법정신이 낮다고 자탄하곤 해왔다. 이제 思考의 방향을 전환해볼 때인 것 같다.

立法節次 내지 과정을 길게 잡고서 미리부터 준비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遵法精神이 낮은 것, 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 모두가 国民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결코 없다고 생각된다.

토지는 모든 통치의 근간

「丹齋賞」수상한 김태영교수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50주기를 맞아 도서출판 「한길사」가 제정한 제1회 단재상 수상자로 본교 사학과 김태영 교수(한국 근세사)가 선정됐다.

『다른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는다는것이 기쁘다기 보다 오히려 민망스럽기 그지 없읍니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김교수는 『단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부나 논문을 써본적은 없으나 학문이나 독립운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분이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역사학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구래의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역사관을 창출해내는데 길잡이가 되신 분이기도 하죠』라고 그를 높이 평가한다.

84년 동아일보사가 선정한 현대 한국인의 명저 1백권중에 한권으로 선정되기도 한 『조선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가 학계에 높이 평가 받아 상을 타게 됐다는 것.

『제가 토지제도를 전공하게된 동기는 과거 농업시대에는 토지는 모든 통치의 가장 기본이될뿐만 아니라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회 경제사 분야, 그중에서도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라고 우리 국사학연구의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국사학의 모든 분야가 일본인 학자들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라며 그러나 토지제도사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어떤 학자라도 자신이 있다는 김교수의 말에 강한 자신감을 느낄수 있었다.

『특히 토지제도 연구는 나름대로 끈기와 인내도 있어야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일정한 장벽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읍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는 11년전부터 시작했으며 자료수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소 역사관에 대해서도 『어느나라를 불문하고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단지 지금까지 왕조중심의 사관이 팽배해왔던 것은 위정자들이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도용했던 것 뿐입니다.

이점은 일찌기 단재도 간파한바 있고 동학 농민 혁명이 비록 외세의 힘에 의해 실패로 돌아 갔지만 그러했고 기미 3.1 독립 선언서에서도 민중의 직접 혁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입니다』라는 김교수는 평소 명강의로 소문난 강의시간에도 민중과 역사의 관계를 누누히 강조해왔다.

주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글을 쓰지 않는다는 김교수는 식민지 사관에 대해서도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역사의식의 출발점은 항상 현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실이 기형적 모습으로 변해있는 한 일제의 식민지 사관은 결코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사관은 공허한 것임을 일깨우기도.

철학에의 관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며 사회가 개방적이어야 만이 세계 각국의 역사 이론을 활발히 도입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함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는 김교수는 학생운동에 대해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말끝을 흐린다. 등산은 건강을 유지하는 오랜 취미로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燦>

전통있는 대학분위기 고수

정경대학장 이 명식 교수

『학장에 서고 보니 아직까지 어디등절 합니다. 전통이나 위치로 보아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정경대의 학장으로서 국내·외의 여러 어려운 여건과 더불어 이 자리를 맡고보니 솔직히 말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정경대 학장실을 찾은 기자에게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로 맞이하는 이교수의 첫 마디이다.

평북 정주태생인 이교수는성실성, 책임성을 생활신조로 하경대 도서관과 휴게실의 개량에도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소에 등산과 테니스를 즐기는 이교수는 얼마전 테니스를 치다가 삔 발목을 두드리면서 『개인주의를 지양하는 서로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철학, 어학과 낭만을 같이 하며 현실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 할 수있는 정경인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경 학도로서의 자세에 대하여서도 언급한다.

『현 대학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문의 여론적인 면과 사회의 실제적인 면을 잘 응용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학생들의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더욱 두꺼워져 가는 교수와 학생간의 벽을 헐어야만 진정한 학문의 장인 대학이 될수있을 것이다』라고 현 대학 교육의 과제와 대학의 해결해야할

사제간의 화합에 노력 할 터

도서관·휴게실 개량 계획

며 『어떤문제에 처했을때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노력한다』고 그의 자세를 말한다.

지난25년동안 나태한 마음없이 나름대로 성실히강단에 선것이 가장보람있었다고 말하는 이교수는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식전달에있어 주입식 보다는 창의적인 응용력을 키워주는것이필요하다』며 그의 강의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피력.

정경대의 당면 문제점에 관하여 『정치·신문계열과 경상계열, 두 계열간의 이질화와 그 밖에 정경대의 전통성고수, 교수와 학생간의 조화와 협동이 미흡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 모든 문제는 교수와 학생이 서로 화합하는 노력이 중요 하겠고 저도 학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또한 학생 복지면에서는 『건물이 오래되어 많은 불편이 있지만 먼저 정경대의 노후된 시설과 난방장치의 보수를 금년안으로 실시할 것이며 또한 정문제에 관해서도 간단히 피력하였다.

슬하에 3남을 두고 있는 이교수는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제가 할일은 능력껏 힘닿는대로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희노애락을 나눌수있는 사제관계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기·비정기적인 모임의 자리를 자주 가져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의 장을 넓혀 불신의 벽을 헐겠으며 교수, 학생, 동문의 삼위일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통있는 정경대학의 분위기를 고수해 나갈 것이며 그럼으로써 정경대학이 진정한지성인의 문화집단으로 성장할수 있을 것입니다』고 말을 맺는 이교수의 주름진 눈가에는 새로운 각오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교수는 워싱톤 주립대학을 거쳐 본교에서 「국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지난 61년 본교에 부임했다.

<範>

현실이 기형적 모습으로 있는 한 식민사관 극복 어려워

말으며…떠나며

舊 황 문 수 주간교수

문제 다루는 방법론이 대학신문 質 좌우

『속이 후련한데요』 신문사를 떠나는 황문수교수의 소감 첫 마디. 『도깨비들하고 헤어지게 된 것이 마음 편한 일 아닙니까?』라며 도깨비 (대학주보 기자들을 말함) 들 때문에 한참 어지러웠다고.

수수한 복장에 텁텁한 웃음, 교수라기보다는 동네에서 자주 대하는 아저씨라고나 할까, 거리감 없는 유우머까지 결들인 황교수는 「대학 신문은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에 중요성이있는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느냐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대학 신문관을 펼친다.

『대학 신문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읍니다. 그 장점이란 아카데미즘을 포함한 다양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라는 황교수는 「대학 신문은 더 큰 문을 개방해야한다」고, 더불어 「대학생이 갖고 있는 문제도 대학신문에서 부각시켜야한다」고 말한다.

2남1녀중에 1녀를 끔찍히도 사랑한다는 황교수는 「1녀라는 말은 고딕으로」해달라고 부탁아닌 부탁을 해, 자상한 아버지 상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는 학생들은 사고의 폭도 넓었어요. 또 다양하기도 하고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생활을 했지요』라며 옛날을 회상하고는 『사회적 환경 탓인지 몰라도 요즘 대학생들은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을 좋아하는 것 같읍니다. 또 대학생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폭넓고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듯해요』라며 젊은이들의 경직된 의식을 꼬집기도 한다.

그래서 대학생은 더 더욱 책을 많이읽어야 한다는 것이 황교수의 지론 『요즘 학생들이 베스트셀러나 읽는 지 궁금해요. 쉬운 책부터 읽고 점차 철학이나 사회적 책도 읽어야지요』라며 이러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사회를 제대로 볼 수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황해도에서 태어나 고대 철학과를 업한 황교수는 대학생들의 일회용 문화에도 불만이 대단하다. 『요즘 모든 것들이 일회용이에요. 자판기를 비롯해서 애인까지도 「이를도 몰라요 성도 몰라」라는 식으로 돼 있읍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일회용문화를 더 애용하고 있읍니다』며 자신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또한 대학 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낭만이 있어야 한다는 황교수는「연애편지를 쓰는 학생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연애편지는 쓸 때 느끼는 마음의 진지함, 생각의 통일성, 적절한 단어 구사등 智·情·義가 합일된 것이라는 「연애편지론」을 편다.

건전한 대학생활은 어떠한 것을 이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편협된 공부가 아닌 넓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전공에 관련된 공부만 하면 기능인과 다를바가 없읍니다. 전공서적뿐 아니라 교양서적도 읽음으로써 자신의 인격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며 「피테의 지성을 본받으라」고 철학을 전공한 황교수다운 말을한다.

지난 80년도 부터 본교에 재직중인 황교수는 『교수님 멋좀 내시고 다니시죠』라는 기자의 권고에 「나 자체가 멋 아니겠느냐」는 자부심을 보인다. 외모만 멋있고 알맹이는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멋있지않느냐는 것이황교수의평소의생각.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연구해야겠읍니다』며 당연하면서도 소박한 소망을 펼친다.

<洙>

新 박 이 도 주간교수

다시 한번 진정한 아카데미즘의 불길을……

캠퍼스에 새 손님이 밀어 닥쳤다. 기대와 호기심에 찬 신입생의 순진함과 맑은 표정이 우리 모두의 꿈을 보는 것 같다. 떼지어 날아 와 인사하는 까치들, 발밑에 까지 다가 서는 다람쥐의 동작에서 또 한번 계절이 주는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그 생동감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해 갈것인가를 생각해보자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지식의 量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현상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이 있다. 이는 분명 지식의 양적인 팽배가 인간의 지적 한계에위협을 주기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 차원 내지 과학주의에 대한 가치판단의 혼란등이 현대인을 외소하고 소외된 존재로 떨구어 버린 것이다. 결국 문명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지식의 역사에 힘입은 결과이나 이제 감당할수 없는 그해독현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대학이 지식의 역사를펼쳐온 선도자였다면 그구성원들은 아카데미즘에 입각한 이데아의 세계를창조해온 빛나는 정신적 지주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문명의 산물로 일어나는 아노미현상들을치유하는책임이 대학인에게있다는 결론이 나올수밖에없다. 이같은 신념과 이상을 구현해 가기위해서는 또한차원은 뛰어넘는 아카데미즘의 불을 불여야 할것이다.

나는 오늘의 대학신문들이 가고있는対他的인 自己喪失的 투쟁양상이 꼭같은 목소리로 높아만가는것에 경계심을 갖게된다. 이런 경향은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 그 이상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카데미즘은 사실판단보다는 가치판단에의 정열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창조지향적인 긍정적 가치관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는 값진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할 것은 소박한 人情에 따라 일체감을 확인하고 대학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인문주의적 바탕에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위해서는 오늘날의 아노미 현상을 극복해 나갈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대학에 관한 고전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대학이 학문의 提高를 위해 쏟아야할 사명과 의무는 어떤 여건에서도 바뀔수 없다. 야스퍼스는 『大学の理念』에서 「학문의 자유는 지적 철저함, 방법과체계를 제외한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직업적인 자유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형적인 학문, 불편부당한 현실적 차원의 즉각적인 목적 이념에서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영원한 미래지향적인 학문의 목표를 암시해주는 것이다. 야스퍼스는 이어 대학이 진리와 인류의 진보를 추구하는 특히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우리의 대학신문들이 물개성적인 칼러와 급진적 변혁운동에서 자기본성으로 돌아 서야할 때이다. 조용히 우리 심장속의 맥박소리를 들으며 한 밤까지 켜져있는 도서관의 불빛을 바라볼 수 있는 캠퍼스의 풍경이 살아나야 한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속으로는 고뇌할 수 밖에없는 지성의 아성이어야 겠다.

오늘의 지성인이 겪는 모든 당대적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명제처럼 자신의 참 존재를 항상 반문하는 거울이 되어야겠다.